

환경정책

OECD가입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편집부>

1. OECD 와 환경

(1) OECD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한 최선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61.9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OECD 회원국의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나 전세계 총 GNP의 81%, 총수출의 69% 총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61년 발족하였으며, 당시 회원국 수는 20개였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 현재는 회원국수가 28개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9번째 국가로 가입초청을 받았다.

현재 OECD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슬로바키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2)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설립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간에 조화된 국제적 환경규범 수립을 위하여 1970년에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설립하였으며 1985년 이후 환경정책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위원회에 옵저버로 '93년 7월부터 참가하고 있다.

OECD 환경정책 위원회의 주요활동을 보면,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환경정책의 효율성 검토, ▲유해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통제, ▲환경위해저감기술개발, ▲각국

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질 파악을 위한 환경지표의 개발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WTO환경무역논의,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등 국제 환경협상에 있어 사전에 회원국간에 의견조율을 통해 선진국의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가입 추진 경위

- '95. 3. 29 : 공식가입신청서 OECD 사무국에 제출
- '95. 10. 16 : OECD 사무국 가입협의단 방한
- '95. 12. 6 : 환경정책위원회(EPOC)에서 한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사(제1차)
- '96. 2. 8 : 화학물질그룹(CG/MC)의 화학물질 분야 심사
- '96. 3. 23 : 폐기물관리정책그룹(WMPG)의 폐기물분야 심사
- '96. 4. 17 : 가입협의자료(Memorandum) 제출
- '96. 5. 9 : 환경정책위원회(EPOC)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가입 최종 심사(제2차)
- '96. 10. 11 : OECD 가입초청

3. OECD 환경규정 개요

OECD 환경규정은 총 65개로서 OECD규정(총170개)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심사시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분야 및 폐기물 분야 등 12개 규정은 조건부 수락(단

제적 수용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행 규정으로 이행 가능한 53개 규정은 조건없이 수락하였다.

조건부 수락(Acceptance with observation)은 기본적으로 OECD 규정을 수락하나 현행 제도나 정책이 OECD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하여 OECD 규정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참고 표1>

OECD 환경규정은 결정(Decision)규정 13개, 권고규정(Recommendation) 46개, 선언(Declaration)규정 4개 및 성명(Communiqué)규정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규정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회원국들을 구속하고 있으며, 권고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지만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선언 및 성명의 경우에는 회원국 환경지도자들의 정치적 약속으로 되어 있다.

4. OECD 환경규정 주요내용 및 대책

(1) 조건부 수락사항

조건부 수락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는 제도로서 OECD 규정에 맞추어 국내에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을 말한다.

① 우수실험실 운영지침(GLP) 수립시행과 화학물질 환경영향 평가제도 확립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통 전 안전성평가가 요구됨

- 독성시험자료의 국가간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험실운영과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추진

<개선대책>

-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및 유해성 시험방법 제정 실험실의 인원, 시설, 기록보관등 운영체제규정

<표. 1> OECD 규정 요약

구 분	총 계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 평가	대 기	수 질	개발원조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선언 및 성명
계	65(12)	20(10)	8(2)	6	4	11	7	3	6
결 정	13(9)	8(7)	5(2)						
권고	46(3)	12(3)	3	6	4	11	7	3	
선언 및 성명	6								6

*()는 우리나라가 조건부로 수락한 규정임.

환경정책

신규화학물질의 정부등록, 국제교역시 첨부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시험절차 규정 등

- 국내 독성 연구기관의 전문화 및 국제적 인증 획득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일반독성, 유전독성, 환경독성 등 분야별로 전문화 및 시설 및 인력등 GLP 시험기관 지정
- 기존화학물질 체계적 조사 및 기법 개발
화학물질의 생산·수입 및 유통시 화학물질의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대량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② 재생목적의 폐기물이동 통제절차 개선

〈필요성〉

-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처리통제에 관한 국제 협약)은 재활용목적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 OECD규정은 재생목적의 폐기물(특히 Green 목록)에 대하여 일반적 상업교역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바젤협약 수용법제에 OECD규정을 동시에 수용하는 이원적 운영체제구축 필요하다.

〈개선대책〉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재생목적의 폐기물 국가간이동관련법률 개정을 통하여 OECD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재생목적폐기물의 분류 및 통제 절차를 규정

- Basel 협약과 OECD규정의 조화방안 검토
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와의 비교·검토, 바젤협약 및 OECD 체계의 수용방안 강구

(2) 수락 사항

이미 검토 및 추진되고 있는 대책으로서 OECD規程 수수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①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적용

〈권고내용〉

- 오염저감 및 규제조치를 위한 비용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시키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 환경정책수립시 국제경제적 측면을 고려, 국제무역 및 투자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

〈추진방향〉

- 현행 오염자 부담원칙 관련제도 개선
대기·수질 총량규제도입 및 환경기준 합리화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오염유발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연료·물 등 환경재의 가격 현실화 검토

② 환경정책 수행시 경제적 유인책 사용확대

〈권고 내용〉

- 규제 및 통제보다는 경제적인 유인책을 적용하여 환경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유도
이들의 환경적·경제적 영향 파악을 위하여 예측·계량모델 및 감시기술 개발

〈추진방향〉

- 경제적수단 개발

환경세, 특히 탄소세, 제품관련 간접세 적용 시행검토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등 새로운 제도도입

- 현재 적용되는 경제적수단(배출부과금)의 적용대상 확대 및 요율을 적절히 조정

③ 환경지표 개발

〈권고 내용〉

- 환경상태에 관한 적정지표를 개발하여 의사결정자 및 공공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

- 환경과 거시경제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오염저감비용, 환경영재 평가, 자원의 상태 등을 포함하는 환경정책 개발

〈추진방향〉

- OECD의 환경자료 및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경관련 통계의 선진화 추진

- 환경영재과 경제정책의 실질적 통합과 평가을 위한 Green GNP개발

④ 환경영향평가 강화

〈권고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및 민간사업과 개발원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적용을 확대하고, 이를위한 절차와 방법을 개선,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추진방향〉

-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강화, 대상사업 확대, 주민참여확대

사후관리제도(Monitoring) 강화

-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현재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정부 ODA(공적개발원조)공여시 동내용을 수용

⑤ 대기 · 에너지 · 소음 분야

〈권고 내용〉

- 환경영재과 에너지 관리정책을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상호통합하여 환경적합적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소음공해저감을 위한 시책마련 권고

〈추진방향〉

- 환경영재과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간 연계방안 강구

-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저감기술 개발

- 소음발생 부담금, 저소음제품 장려금등 경제적 유인책 강구

⑥ 수질 및 연안역 관리개선

〈권고내용〉

- 수자원의 보호 및 공급과 관련해 장기수질관리계획 수립하여 수자원 관리시책 강화
설정된 목표이행을 위해 통합관리, 적정가격 설정, 수자원 예측시스템 개발, 지하수 보전계획 등을 수행

환경정책

- 수질 평가시 BOD, COD, SS등 환경기준이외에 생물학적, 유독성 변수도 포함
- 종합적 해안지역관리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

〈추진방향〉

- 수질개선시책 효율적인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단계적 강화
- 수처리기술개발 추진
- 환경 친화적 비료 및 농약개발 지원
-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 파악 및 수질오염 측정강화
- 질소·인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질소·인의 처리를 위한 오·폐수 고도처리 기술
- 해양오염사고(석유 유출등) 예방 및 사고대책 마련

⑦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확대

〈권고내용〉

- 폐기물 장기수질관리계획 수립하고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

〈추진방향〉

- 국가폐기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생원 감소, 재생 및 재활용촉진, 관련비용의 적정배분을 달성

-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
용기의 규격화 및 예치금제도 강화
폐지의 비축시설 확대 및 폐지재생설비 개선

(3) 기후변화협약

- 우리나라에 대한 OECD가입심사시, OECD 규정과는 무관하나, EU를 중심으로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상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감축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입장에 큰 관심표명

- 이에 대하여 아국은 현행 협약상 범적지위인 Non-Annex(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나, 향후 협상진행과정에서 OECD 국가로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자발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
 - OECD 국가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협상이행에 노력
 - 진보된 장기 에너지관리대책 수립
 - OECD의 기후변화관련 포럼에 적극참가
 - 기후변화 국가 보고서 작성시 선진국 형식 참고
 - 현재 협약상 개도국지위는 고수하나 OECD 국가로서 협상에 참가

5. OECD 가입의 기대효과

- (1) OECD는 국제환경협상에서 선진국의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 국제환경협약의 사전논의에 참여 국제적인 환경 규범 형성에 국익반영 가능
 - 환경 이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환경협약협상에 사전대비 가능
- (2)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환경영책 및 환경과학기술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이 가능

환경정책

- 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 선진화된 환경분야의 통계자료와 환경영제지표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화 제고 가능

(3) OECD의 기본이념인 소비자보호 및, 임권등 제반 가치를 국내환경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복지국가건설에 기여

(4) OECD의 환경정책 목표는 우리나라의 장기환경종합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OECD가입과 관련없이 우리나라가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임

6. 향후 추진계획

- 기본전략

우리의 환경정책 및 제도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부담에서는 개도국 지위유지 노력

(1) 환경정책 및 관리 강화

◇ 단계적 수용입장을 밝힌 사항에 대하여는 1998년까지 관련법령개정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

- 우수실험실운영(GLP) 시험기준 및 GLP 기준, GLP 준수여부사찰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
- GLP 시험시설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 재생가능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시 적용되는 OECD 분류체계를 수용

◇ 오염자부담원칙, 통합적 오염예방,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영향평가 강화등 일반 환경관리의 선진화 관련사항은,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Green Vision 및 분야별 중장기환경보전계획(신경제 5개년 계획,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G-7프로젝트)과 연계하여 추진

(2)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응체제 강화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및 에너지사용에 있어 화석연료의존 비율이 높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온난화가스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진행추이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 가능성에 대한 세부입장 및 논리적 협상전략 수립

통산부를 중심으로 외무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소, 관련기업을 연계한 Task Force 형태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지구온난화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수단은 통산부에 있음

* 관련협상에 적극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와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3) OECD 환경정책위원회 (EPOC) 참가 확대

- OECD 환경정책위는 지구환경협약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OECD 회원국으로 EPOC관련회의에 조직적·지속적인 참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환경논의에 적극 반영

- OECD 가입지원사무소(대표부)에 주재관 파견확대 환경 관련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신속한 국제환경동향 파악 및 회원국 대표들과의 접촉률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문 주재관 파견 확대.